

## 보 건 복 지 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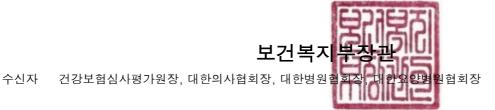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

- 1. 관련근거
  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(2020.5.11)
  - 나. 의료기관정책과-2666(2020.5.15) 및 2741(2020.5.19)
  - 다. 보험급여과-2497(2020.6.16)
- 2. 우리 부는 주요 취약집단시설인 요양병원의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, 결과 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.
- 3.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1부. 끝.



주무관 **방희정** 행정사무관 **장태영** 보험급여과장 **이중규** 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2498 (2020. 6. 16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736 팩스번호 044-202-3960 / coldegg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